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 align="center">『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』 특약 (구 하나은행)</p> <p>제1조 약관의 적용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(구)하나은행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않은 사항은 “예금거래 기본약관(구)하나은행”과 “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(구)하나은행” 및 개별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2조 예금과목 생 략</p> <p>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로 1인 1계좌만 가능하며, <u>타 수수료 면제 통장과 중복가입은 불가합니다.</u></p> <p>제4조 이자지급 ①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의 종류별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(이하 ‘원가일’이라한다)에 원금에 더합니다. 가. 보통예금 : 매년 6월, 12월의 제3금요일 나. 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 다. MMDA : 매년 6월, 12월의 제3금요일 ② 생 략</p> <p>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 ~ ② 생 략 ③ 은행은 이 예금으로 아래 요건 (가), (나) 충족시 <u>수수료 우대서비스 I 만</u> 제공합니다. (가) 전월 월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(나) 전월 공과금 2건이상 등록 ④ 은행은 이 예금으로 (가), (나) 충족하면서 (다), (라) <u>요건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 수수료 우대서비스 I, II</u> 제공합니다. (다) 전월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(라) 전월 하나카드 신용/체크카드 <u>사용실적</u> ⑤수수료 우대서비스 I (무제한 면제) 1).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2).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 3)다. 폰뱅킹(ARS)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</p>	<p align="center">『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』 특약</p> <p>제1조 약관의 적용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“예금거래 기본약관”과 “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” 및 개별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2조 예금과목 좌 등</p> <p>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로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.</p> <p>제4조 이자지급 ①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의 종류별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(이하 ‘원가일’이라한다)에 원금에 더합니다. 1. 보통예금 : 매년 6월, 12월의 제3금요일 2. 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 3. MMDA : 매년 6월, 12월의 제3금요일 ② 생 략</p> <p>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 ~ ② 좌 등 ③ 은행은 전월에 이 예금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<u>충족시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수수료 우대서비스 I을</u> 제공합니다. 1. 전월 월평잔 50만원 이상 유지 2. 전월 공과금 2건이상 <u>이체실적</u> ④ 은행은 전월에 이 예금으로 제3항 제1호와 제2호를 <u>모두 충족하면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수수료 우대서비스 I, II 를</u> 제공합니다. 1. 전월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2. 전월 하나카드 신용/체크카드 <u>결제실적</u> ⑤수수료 우대서비스 I (무제한 면제) 1.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2.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 3. 폰뱅킹(ARS)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</p>	<p>약관명 변경</p> <p>기본적용 약관 변경</p> <p>중복가입 불가 삭제</p> <p>변호변경</p> <p>공과금 자동이체 실적기준 및 변호변경</p> <p>카드 실적 기준 및 번호 변경</p> <p>변호변경</p>

<p>4).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</p> <p>5).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</p> <p>6).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</p> <p>7). 납부자 자동이체(타행자동이체) 거래</p> <p>⑥ 수수료 우대서비스 II (총합 월 10회 면제)</p> <p>1)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</p> <p>2)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거래 (은행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함)</p> <p>⑦ 생 략</p> <p>제6조 우대서비스 변경</p> <p><u>수수료 우대서비스의 세부 요건은 변경 가능하며, 변경 시 변경 사유, 변경 내용 등을 변경 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. 단,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)하나은행 제 21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설</p>	<p>4.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</p> <p>5.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</p> <p>6.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</p> <p>7. 납부자 자동이체(타행자동이체) 거래</p> <p>⑥ 수수료 우대서비스 II (총합 월 10회 면제)</p> <p>1.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</p> <p>2.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거래 (은행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함)</p> <p>⑦ 작 등</p> <p>제6조 우대서비스 변경</p> <p><u>① 수수료 우대서비스의 세부 요건은 변경이 가능하며,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전에 변경 내용을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 합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시행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, 전자우편, 휴대폰 문자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(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 즉시) 통지합니다. 다만, 기존 가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u></p> <p><u>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가입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. 다만, 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u></p> <p><u>④ 가입자가 제3항 본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u></p> <p>제7조 기타</p> <p><u>2016년 6월 7일 이전 가입 계좌의 경우 2016년 5월 실적부터 평가하여 6월부터 본 개정 약관의 우대서비스가 적용됩니다.</u></p>	<p>변호변경</p> <p>우대서비스 변경대한 안내 고지 명확화</p> <p>부칙내용 (삭제) 기타에 명기</p>
---	---	---